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 87

제출년월일 : 1999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
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 마련
 -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
(안 제1조)
 -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기준에 의거 산출
(안 제2조 제1항)
- 용어의 정비
 - 현장조사 및 시험 →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
(안 제2조 제2항)
 -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 →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
과표(안 제4조)
 - 공용조사 및 시험 →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
험과 검사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6. 개정근거

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(1997.8.25 건설교통부령 제115호)의 개정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현장조사 및 시험”을 “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일체”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”를 “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도로관리사업소장”을 “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공용조사 및 시험과”를 “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…… 충청북도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……</p> <p>제2조(수수료) ①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시행규칙”에 따른다.</p> <p>②현장조사 및 시험 …… …… (이하생략)</p> <p>제3조(징수방법) ① …… …… …… ……일체 …… ②(생략)</p> <p>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 ①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 …… …… ② …… ……도로관리사업소장 …… ……</p> <p>제5조(수수료의 감면) …… ……공용조사 및 시험과 …… …… ……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수수료) ①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징수방법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 ①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수수료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와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

-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
제48조(품질시험·검사대행 국·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)

- ①법 제25조 제1항에서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·공립시험기관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.
3. 시·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

□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

제19조(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)

- ①법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,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13과 같다. 다만,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·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.

-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